

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5영업일”을 “10영업일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3 제28호의4를 제28호의5로 하고 제2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의4.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마련

별표 3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의2.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

별표 3 제3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4의2. 법 제39조에 따른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

별표 3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3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·해산·폐업 및 영업의 양도·양수 인가의 심사

별표 3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6의2. 법 제62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부족한
자산의 보전 명령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